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상징성과 생활문화적 의미에 관한 고찰

Ceremonial Bojagi used in Yeongjo Jeongsun Wanghu's Royal Wedding in Living Culture Perspective

김효주, 주영애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Hyo-Joo Kim(darmy61@gmail.com), Young-Ae Ju(jyoungae@sungshin.ac.kr)

요약

본 연구는 1759년 6월에 거행된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서 사용된 물품 중 보자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명칭, 옷감, 크기 및 용도, 사용상황, 외형의 특징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상방정례』와 『국혼정례』에 기록된 보자기 관련 자료와 『조선왕조실록』의 혼례 관련 기록의 정리를 통해 보자기의 외관 및 사용용도와 당대의 생활상을 비교·분석하여 보자가가 담고 있는 생활 문화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18세기는 유교적 의례문화가 확립되고 실행되던 시기였고 왕실의례는 유교이념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실행의 장이었다. 따라서 왕실의 가례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유교적 예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영조는 혼례에 사치를 경계하여 본인의 가례에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사치를 금한 기록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보자기의 재질은 대부분 홍주(紅紬), 홍초(紅綃), 대홍광적(大紅廣的) 등의 무늬가 없는 옷감으로 영조의 검소와 절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는 우리의 전통 의례용품인 동시에 전통의례에 깃들여 있는 성(誠)과 예(禮)의 가치를 표현하는 문화유산이다.

■ 중심어 : | 보자기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 전통의례문화 | 생활문화 |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usage of bojagi recorded in Yeongjo Jeongsun Wanghu garye dogam uigw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eighteenth century marked a period of entrenchment of Neo-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wedding was a tool to propagate Neo-Confucian values to the people. The bojagi used at King Yeongjo and Queen Jeongsun's wedding were made of simple red silk produced domestically to avoid extravagance. Usage of costly flower-patterned silk from China was restrict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the Kukhon jeongrye, which codified the royal marriage ceremony and the Sangbang jeongrye, which regulated royal attire. This modesty also shows King Yeongjo's determination to abandon lavishness.

■ keyword : | Bojagi | Yeongjo Jeongsun Wanghu Garye Dogam Uigwe | Ceremonial Cultural Heritage Contents | Living Culture |

I. 서론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의례용품들은 그 시대가 낳은 최고 수준의 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한민족의 생활문화가 현재와 과거의 사고방식을 비롯한 생활양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유교적 전통사회의 왕실 행사인 의례에 쓰인 용품들은 미적·경제적 가치 외에 신분과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당대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상징물이었다.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중 보자기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사용방식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다. 유교적 전통사회의 최고 행사인 왕실의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물건을 보호하고, 싸고, 나르는 기능 외에 왕실 의례의 모습과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왕실가례에 대한 절차, 예복 및 기물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궁보의 특징과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왕실가례에 사용된 물품을 싸는 보자기에 대한 육체절차의 단계별 사용용도, 명칭, 옷감, 크기 및 외형의 특징을 정리하여 이에 함축된 생활문화적 의미를 찾는 학술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왕실 의례용 보자기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등의 왕실가례 관련 규범, 왕실가례의 기록서인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의 사료를 통하여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영조·정순왕후의 가례는 의례에 관한 규범을 새로이 정비한 후 처음으로 거행된 국혼이었으며, 영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절차는 물론이고 혼례용품까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당대 왕실 생활문화의 특징과 문화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1759년(영조 35)에 거행된 영조와 그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가례의 기록인 의궤를 통하여 왕실 혼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형태와 용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물건을 보호하고, 싸고, 나르는 기능 외에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며, 그 시대 왕실 의례의 모습과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영조는

본인이 제정한 혼례규범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절약과 검소를 실천하려는 그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왕실 혼례의식이 완성된 체계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가례용품 중 보자기를 사용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및 사용시기 등에 따라 분류하고, 시대 상황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 혼례문화 연구에서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왕실 가례용 보자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상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조선왕실의 혼례문화와 의례용품

1. 왕실혼례의 사회문화적 배경

조선은 건국이념에 따라 이전의 토속적인 의식과 불교·유교적 의식이 혼합된 사회문화적 질서에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예교질서(禮敎秩序)가 정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의 통치규범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예전(禮典)의 근간이 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되었다[2][3].

세종의 지시에 의해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최종적으로 완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으로서 이후부터 한반도의 국가 의식들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정례화되고 체계적으로 변하게 된다[4][5].

이러한 예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에서 영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이나 사대부의 혼례과정에서 사치한 폐습이 지속되어 왔고, 이의 영향을 받은 일반 서민들도 한 번의 혼례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혼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혼기를 놓치는 일이 비밀비재하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영조는 당시 왕실의 운영이 방만하여 사치에 흐르고 국고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재정 체계를 바로잡고 용도의 절감을 꾀하기 위해 주요 왕실기관의 재정 운영 규정인 『탁지정례(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 왕실가례 시 지출 규모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어 혼수의 규모가 한결같지 못하고, 비용의 낭비가 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혼정례(國婚定例)』를 제정하였다. 『국혼정례(國婚定例)』는 왕비를 맞는 가례를 비롯한 각종 왕실의 가례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각종 예식에 사용되는 물품과 그 수량 및 액수가 항목별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왕실혼례의 용품과 규모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상방정례(尙方定例)』는 『탁지정례(度支定例)』가 편찬된 뒤 상의원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를 위해 별도로 편찬한 규정이다. 권말에는 국혼 시 의대(衣帶), 납채(納采), 납폐(納幣), 동퇴(同牢), 기명(器皿)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의례용품 연구에 참고가 된다.

영조 후기 왕실혼례에 관련된 상기 규정의 제정과 이를 실천하려는 국왕의 의지에 맞추어 영조 자신의 가례가 거행되었고, 왕실혼례의 체계화가 실현되었으며, 이의 결과물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는 왕실혼례절차의 과정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조선왕실의 의례용품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은 의례의 의미와 상징성을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의례에서 사용되는 용품과 도구는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사상이 결합된 생활문화의 일면을 보여 준다.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들은 그 의례의 목적과 의미를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왕실에서 사용되는 혼례용품들은 흠 없는 물건의 선정을 통해 왕실가족의 신분적 고결함을 표현하는 상징성이 강한 용품으로, 다산과 화합을 바라는 왕실의 염원을 담아 제작되었다.

그중 왕실의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국혼정례』, 『상방정례』 및 『궁중발기』 등의 왕실의례 관련 규정에 상세한 크기, 색, 용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용도와 종류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남아 있다.

이러한 궁중 의례용 보자기는 조각천이 아닌 온전한 옷감으로 용도에 맞추어 제작되었다는 점과 홍색계통

의 비단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궁중 의례용보는 포장내용과 용도에 따라 크기, 색,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상방정례』에 수록된 용도별 보자기의 크기 및 형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상방정례』에 수록된 보자기 크기별 포장 내용[6]

품수	종류	포장 내용물
1 품	홀보자기	말총으로 짠 망건[馬尾網巾]
	합보자기	은손가락[銀匙], 은정가락[銀筋]
2 품	홀보자기	각종 신발[靴鞋] 두건[頭巾]
	겹보자기	은사발[銀鉢里], 은주발[銀椀], 은대접[銀匙貼] 등의 은기명[銀器皿]
3 품	홀보자기	모라사모[毛羅紗帽], 청초립[靑紵笠], 신발, 허리띠[腰帶], 팔씨[拾], 버선감으로 쓰는 백정포[足巾次白正布], 경대[鏡臺]
	겹보자기	각종 칠함[漆函] 내부, 모라사모[毛羅紗帽]
	합보자기	평천관[平天冠], 원유관[遠遊冠], 모라익선관[毛羅翼善冠]
4 품	홀보자기	면복[冕服], 강사포[絳紗袍], 의복용 옷감, 궤[櫃], 보록[寶蓆]
	겹보자기	청초립을 넣는 집
	합보자기	말총으로 짠 머리쓰개[馬尾頭篋]
5 품	홀보자기	요, 물바가지[軟杓]
	겹보자기	팔걸이[几]
6 품	홀보자기	각종 칠함외부
	겹보자기	각종 칠함내부
7 품	홀보자기	요, 솜이불[襦衾]
	겹보자기	병풍
8 품	홀보자기	요, 솜이불

III.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

1. 영조·정순왕후 가례

조선 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은 숙종의 넷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숙빈 최씨(淑嬪 崔氏)이다. 1721년(경종 1)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724년 경종의 승하 후 왕위에 올랐다. 11세 때(연인군 시절)인 1704년(숙종 30)에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1692~1757)와 혼인하였으나, 1757년(영조 33)에 세상을 떠나자 2년 뒤인 1759년(영조 35) 6월 당시 15세의 나이인 오홍부원군 김한구(金漢著)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년)를 계비로 맞이하였다. 영조·정순왕후의 가례는 1759년 6월 2일 초간택을 시작으로, 삼간택,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퇴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가례도감(嘉禮都監)에서 보자기를 포함한 필요 물품을 미

리 정하고 각 절차와 용도에 맞춰 준비·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국가 의식이나 행사가 끝나면 조직, 예규, 업무, 행사, 결과 등 의식의 전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인 의례를 남겼다. 의례(儀軌)란 '의식(儀式)의 궤범(几範)'이라는 뜻이다. 국가나 왕실의 주요 행사에 대한 절차와 내용, 소요 경비, 참가인원의 임무 및 포상내역 등 의례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그림을 포함하여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7].

2.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특징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1759년 5월 6일부터 6월20일까지 가례 준비에 관한 왕의 지시 사항과 신하들의 건의 사항인 계사(啓辭)의 기록 그리고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리연(同牢宴) 등 육례(六禮)에 사용된 물품 목록과 일방의궤(一房儀軌),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의 자료 중 육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해 제작된 사각천을 총칭한다. 왕실 의례용 보자기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용용도, 크기, 옷감 등이 정해지고, 그 내용이 보자기 명칭에 반영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일례로 납채용 보자기 중 교문지 한 장을 싸는 보자기의 경우에 '안싸개용 홍초(紅綃) 3폭 겹보자기 1건'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용용도, 옷감, 크기, 형태, 수량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국역본에 나타난 보자기 관련 어휘는 홀보자기[단보(單褙)], 겹보자기[겹보(袂褙)], 상건(床巾), 부건(覆巾), 함보(函袱) 및 싸개용 핫보자기[유보(襦褙)], 옥책(玉冊) 사이에 끼우거나 옥책(玉冊)사이를 막는 막이용 핫보자기[격유보(隔襦褙)] 및 옥책(玉冊)을 싸는 갑(匣) 등이 있다.

이러한 보자기에 대한 명칭은 용도, 보자기 안의 내용물, 보자기의 외형에 따라 정해졌다. 용도에 따라 명칭이 정해진 예로는 상건(床巾), 부건(覆巾) 등으로 상

(床) 또는 안상(案床) 등을 덮거나 다리부분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이다. 또한 함·궤 등을 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함보(函袱), 교문지(敎文紙)를 싸기 위한 교문보(敎文袱)등 보자기 안에 싸여지는 물품을 기준으로 명칭을 정한 예도 있다. 보자기의 외형에 따라 명칭이 정해진 예로는 홀보자기[단보(單褙)]와 겹보자기[겹보(袂褙)]가 있다. 홀보자기는 한 장의 천으로 만든 보자기를 뜻하며, 겹보자기는 두 장의 천을 맞대어 겹으로 바느질한 보자기를 일컫는다.

상건(床巾)은 원래 상 전체를 덮는 형태로 사용되었으나 『영조실록』 영조 28년(1752) 4월 2일 기사の内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보는 으레 4면(面)을 돌렸는데 이제 생초(生綃)의 큰 보(袱)로 덮는다면 낭비일 뿐더러 제도도 잘못된 것 같으니, 덮지는 말고 두르기만 하라."¹⁾는 전교가 내려짐에 따라 상을 두르는 용도로 사용된 보자기이다.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일이 1759년(영조 35)임을 고려할 때 이때의 상건(床巾)은 두르는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건(覆巾)은 상, 궤, 함 등을 덮는 용도로 독책상(讀冊床)이나 독보상(讀寶床)처럼 크기가 비교적 작고 낮은 상을 덮거나 상 위의 물건을 덮는 데 사용된 보자기이다.

책비 시 왕비 책봉에 소용되는 옥책(玉冊) 등의 중요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 사이사이에 끼우는 보자기로 사용되었던 막이용 핫보자기[유보(襦褙)]는 솜을 옷감 사이에 두고 바느질한 보자기이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서는 옥책(玉冊)이 6첩으로 구성됨으로써 옥책(玉冊)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솜을 넣은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 5첩이 사이사이에 끼워졌다.

싸개용 핫보자기[유보(襦褙)]는 금보(金寶), 보통(寶筒), 보록(寶鬘), 주통(朱筒), 주록(朱鬘) 등 중요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솜을 옷감 사이에 두고 바느질하여 제작된 보자기이다.

갑(匣)은 왕비의 책봉에 대한 내용을 옥 조각[옥간(玉簡)]에 글자로 새겨서 책 모양처럼 엮은 의례용 문서인

1) 『영조실록』 76권, 1752년(영조 28) 4월 2일의 기사.

都監卽廳洪樂性曰：“監造官問祭床所覆巾大小矣。”上顧謂金尙星曰：“床巾，例繞四面，而今以生綃大袱覆之，非特浮費，制度似誤，其令不覆而繞之。”仍命各陵墓床巾，一例著式

옥책(玉冊)을 싸는 데 사용하는 십자형 겹보자기이다. 밖은 홍광적(紅廣的)을 사용하고 안은 남광적(藍廣的)을 사용하며 속 넣기는 홍색으로 물들인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였다. 길이와 너비는 침수의 다소에 따라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하여 조절하며, 끝단에 상아(象牙)로 단추(丹樞)를 달았다. 옥책(玉冊)의 포장은 십자형태의 갑(匣) 가운데 놓은 후 십자의 날개 중 상단과 하단을 위로 덮어서 단추로 채우고 마찬가지로 우단과 좌단을 위로 덮어 단추로 채웠다.

2) 옷감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대다수가 홍초(紅綃)나 홍주(紅紬)로 제작되었다. 홍초(紅綃)는 생사로 직조된 얇은 비단으로 조선시대 관리들 조복의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홍주(紅紬)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의 총칭으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견직물의 한 종류이다. 그밖에 짙은 다홍색의 비단인 대홍광적(大紅廣的)이 있다. 옥책의 안싸개용으로 사용되는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는 대홍색 견방사의 일종인 방사로 짠 평견직물로 중국 호주(湖州)의 특산물이다. 방사주는 方絲紬, 方紗紬, 紡絲紬 등으로 표기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는 옥책의 안싸개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방의궤에서 대홍방사주 15필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

이밖에 내함의 겹싸개용 보자기와 쌍이단엽금잔 및 은도금대 등의 기명을 싸기 위한 보자기 재질인 자적초(紫的綃)는 자적색 얇은 생사 견직물로서 조복의 옷감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은초아와 은수저 등의 기명을 싸기 위한 자적주(紫的紬)는 꼬임이 없는 중·하등급의 평견직물로서 가장 보편적인 견직물이며, 안보(按楸)의 주렴을 짠 자적투주(紫的吐紬)는 굵은 실로 짠 명주로 다소 두꺼운 견직물이다. 은봉병, 근배, 은바리, 은주발, 은수저첩 등의 기명을 싸기 위한 보자기의 재질인 홍세목(紅細木)은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직물이다.

의궤에 기록된 보자기색의 대다수가 붉은 계통인데 홍색 물을 들이는 자초와 홍화는 다른 색에 비하여 염색 비용이 두 배 이상 들었으므로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보자기의 염료로 사용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궁궐에서

쓰는 공보는 대다수가 홍색으로 제작되었는데, 보자기 포장 후 외관상의 위엄을 짐작할 수 있다[8].

영조는 의례용품의 사치를 경계하여 보자기 재질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이 있다. 『영조실록』 영조 28년(1752) 11월 17일의 기록에 따르면 “혼전(魂殿)에 사용하는 보자기와 요 그리고 상건(床巾)을 무늬 있는 비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향주(鄉紬)로 대신하고, 그전에 향초(鄉綃)를 사용하던 것은 그냥 두라고 하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 또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1762년 영조가 혼례보자기에 대한 사치를 금한 내용이 담겨 있는 데, 직조 비용이 많이 드는 무늬가 있는 비단 대신 향주(鄉紬)를 사용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있다[9].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보자기는 대부분 홍주(紅紬), 홍초(紅綃), 대홍광적(大紅廣的) 등의 무늬가 없는 옷감으로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책비에 관련된 물품 중 금보, 옥책, 보통, 보록, 주통, 주록 등의 포장은 『국혼정례』에서 문단류의 대홍운문대단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궤에는 대홍색의 폭이 넓은 견직물인 무늬없는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책비에 사용된 보자기 유물은 금보와 보통을 싸는 보자기가 문단으로 직조된 만초연화문(蔓草蓮花紋)의 핫보자기로 제작되어 있다. 이는 『국혼정례』의 규정과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과 다른 형태로 당시 기존의 옷감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형태와 용도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문서나 물건을 싸기 위한 포장용, 기러기싸개 등과 같은 의례용품을 장식한 의장용, 상이나 물건을 덮는 덮개용 또는 이러한 물건들을 싸서 나르기 위한 운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별로는 한 겹의 옷감으로 제작된 홑보자기와 두 겹의 옷감으로 제작된 겹보자기

2) 『영조실록』 78권, 1752년(영조 28) 11월 17일의 기사.

又敎曰：“太室坐榻所排，昔則用綾，今則用紬。殯魂殿、殯魂宮用綾緞，於心若何？此後殯殿紅廣織帳，代以紅紬，袱與褥、床巾，前或以綾緞者，皆代以鄉紬，前用鄉綃者，仍前之意，載之編輯。”

기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 홀보자기는 함이나 께, 이부 자리, 병풍 등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겹보자기는 주로 문서나 패물 등과 같이 함에 넣을 내용물을 싸는데 사용되었다. 중요 문서나 패물은 겹보자기로 한번 싸서 함에 넣은 후 홀보자기로 그 함을 다시 싸는 것이 일반적인 예법이었다.

표 2. 의례에 수록된 상 덮개용 보자기

상 이름	용도	절차	사용 보자기	비고
당주홍칠 안상	흑칠중함	납채	홍주 6폭 상건 1	함 등의 의례 용품을 올려놓고 준비하는데 사용한 상
	흑칠중함	납징	홍주 6폭 상건 1	
	왜주홍칠 속백함	납징	홍주 6폭 상건 1	
	당주홍칠 함	납징 예물	홍주 6폭 상건 1	
	당주홍칠 중함	고기	홍주 6폭 상건 1	
	왜주홍칠 명복함	책비	홍주 6폭 상건 1	
왜주홍칠 배안상	왜주홍칠 께	책비	홍주 6폭 부건 1	교명을 넣은 왜주홍칠 께를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독책상	옥책	책비	홍주 5폭 부건 1	옥책을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독보상	금보	책비	홍주 5폭 부건 1	금보를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전안상	산기러기	친영	홍주 10폭 상건 1 홍주 6폭 부건 1	산기러기를 보자기에 싸서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찬안상	동뢰연 기명	동뢰연 기명	상건 2	2자가 사용될 동뢰연에 반찬을 올리는 상

햇보자기는 손상되기 쉬운 물건을 보호하도록 솜을 안에 넣어 만든 보자기로 책비 시 옥책(玉冊), 금보(金寶) 등 주요 물품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옥책(玉冊)이나 죽책(竹冊)의 경우 그 책 크기의 작은 막이용 햇보자기들이 각 책의 장 사이사이에 끼워졌고, 십자형태의 갑(匣)으로 불리는 보자기에 포장한 후 겹보자기로 싸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의 책비에서는 짙은 다홍색의 비단인 대홍광적(大紅廣)의 햇보자기로 옥책(玉冊)의 첩과 첩 사이에 상하지 않도록 끼워 넣고 위·아래에는 종이로 끼워 물품을 보호하였으며, 갑(匣)으로 포장한 후 다시 대홍방사주 겹보자

기로 썼다. 부건(覆巾)과 상건(床巾)은 가례 시 사용하는 기물을 덮거나 상의 다리를 가리는 오늘날의 테이블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상건(床巾)은 의례 시 함이나 께를 임시로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형태적으로는 상다리가 긴 안상(案床)에 다리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부건(覆巾)은 상위의 물건을 덮는 용도나 상을 덮는 테이블보 역할을 하였는데 옥책(玉冊)이나 금보(金寶) 등의 귀중품을 넣은 소함을 올려 이동과 전달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독보상(讀寶床)이나 독책상(讀冊床)에는 부건(覆巾)을 주로 사용하였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상건(床巾)과 부건(覆巾)의 용도는 [표 2]와 같다.

4) 제작자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류는 상의원(尙衣院)에서 제작되었다. 상의원(尙衣院)은 왕실에서 소용되는 물건을 제작하고 보관·관리하는 관청으로 왕실 의례 시 소용되는 모든 물품의 제작과 공급을 담당하였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중 도청의궤의 기묘 5월 9일 도감낭청과 영조의 대화를 살펴보면 가례 시 사용하는 각종 직조와 바느질을 상의원에서 거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목이 있다.³⁾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숙련된 궁중의 침방나인 혹은 침선비에 의해 제작되었다. 침선비들은 상의원과 제용감(濟用監)에 속해져 있었고, 침선비들은 도감이 설치되면 다른 직인들과 더불어 일방, 이방, 삼방에 배치되어, 염색 및 직조와 더불어 궁중에서 소용되는 다양한 물품들을 제작하였다. 그들은 의녀들과 마찬가지로 차출된 관에 소속된 신분이었으며 의례에 보수와 이음이 수록된 전문인이었다.

3)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啓辭秩 己卯五月初九日, p.0023.都監郎廳, 以都提調意 啓曰, 嘉禮時, 大殿 中殿衣櫛所入匹緞及 敎命所入各樣織造, 例自尙方舉行矣. 今亦令尙衣院別單書入後, 趁速舉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계사절, pp.8-9.도감 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가례 시 대전(大殿)과 중전(中殿)의 옷에 쓰이는 비단과 교명(敎命)에 쓰이는 각종의 직조(織造)는 으레 상방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상의원(尙衣院)에서 별단에 써서 들인 뒤에 서둘러 거행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도청의궤 기묘 5월9일)

강서영(2012)의 연구[10]에 의하면, 조선말 궁중에서 제작 사용된 보자기 발기에 나타난 제작 침공가는 보자기 크기가 클수록,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상의원(尙衣院)에 속했던 침선비들의 이름이 일방에 차애(次愛), 홍애(紅愛), 분애(粉愛), 옥대(玉臺), 이방에 초정(草貞), 행화(杏花), 두매(斗梅), 옥랑(玉娘), 삼방에 춘향(春香), 재정(再情), 일애(一愛), 취열(憵烈) 등으로 기록⁴⁾되어 있다.

IV.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의미와 상징성

1. 왕실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

조선왕실에서의 의례는 유교의 이념을 따르고 바르게 실천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실행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왕의 가례는 한 나라의 근본이 시작되고 다음 세대에 나라를 이어갈 후사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다.

전통 사회에서 보자기에 대한 가치와 비중을 이해하는 예로 표전문(表箋文)을 쓰는 보자기를 들 수 있는데 표전문보는 의례용 보자기 중 정성과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국가 간 의전용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표전문 보자기의 예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태종 18년(1418) 7월 29일 기사⁵⁾에 의하면, 하천추사(賀千秋使)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윤사영(尹思永)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와서 표전문을 보자기로 싸지 않고 전달한 것에 대해 “차후로 보자기에 싸서 전달하여야 되겠다.”고 보고한 기록이 나온다.

4)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一房儀軌-工匠秩, p.0250.
針線婢次愛紅愛粉愛玉臺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二房儀軌-工匠秩, p.0080.

針線婢草貞杏花斗梅玉娘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工匠秩, p.0152.

針線婢春香再情一愛憵烈

5) 『태종실록』 36권, 1418년(태종 18) 7월 29일의 기사. 賀千秋使藝文館提學尹思永回自北京. 思永啓曰: “臣奉箋筒, 初到遼東, 遼東以黃袱裹外, 自遼東至帝所, 相遞而裹. 獨我國不裹以行, 誠爲未便. 請自今以後, 奉使者以黃袱裹行.” 教曰: “聖旨筒到我國時, 亦裹黃袱乎?” 李明德問於通事金乙亥, 乙亥曰: “然.”

이후 세종 21년 6월 19일의 기록⁶⁾에는 중국에 보내는 표전문의 통 및 보자기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실시하는 등 표전문을 쓰는 보자기가 단순한 포장 용도가 아닌 정성과 예절을 갖추기 위한 의전용품임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 14년(1738)에 기록된 칙서를 쓰는 황색 보자기에 관한 내용과 영조 19년(1743)의 외교용 보자기를 쓰는 누런 보자기에 대한 언급은 황색 보자기가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색임을 고려할 때 이는 보자기가 단지 예절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 외관으로도 내용물에 대한 의미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 간의 외교에 사용된 의전용 보자기와 더불어 나라의 중요한 의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중요한 의례용품으로 실록 등의 사료에 다수 언급이 되고 있다.

왕실의례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왕의 가례는 철저한 준비 과정과 계획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가례에 소용되는 용품들은 각 절차별로 필요 품목, 용도 및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물품의 확보와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왕실의례에 사용되는 보자기는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물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간과는 구분되는 색과 재질을 사용하였고, 용도와 사용처를 미리 계획한 후 제작되었다. 따라서 가례의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 일반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유교적 예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싸고 나르는 오늘날에서의 포장 개념의 보자기 용도에 더하여 보자기 자체가 의례에서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했다. 보자기는 왕실가례의 절차마다 중요 물품과 상징물을 싸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색은 대부분 홍색으로 당시 염색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특수한 색이었으며,⁷⁾

6) 『세종실록』 85권, 1439년(세종 21) 6월 19일의 기사. 乙未/傳旨禮曹工曹: 大抵圖畫細畫之有無, 人未易知. 事大表箋筒及袱所畫龍鳳支體羽翼, 不可差誤一畫, 而國初已被上國之責. 其後或不點眼, 或不畫(瓜) [爪], 至拜表之日, 乃知其誤, 官吏被劾者有之. 今後表箋筒及袱所畫龍支爪頭角耳目鼻口及所畫鳳足爪毛羽眼, 更須備細審閱, 毋致差誤.

7) 『세종실록』 35권, 1427년(세종 9) 2월 19일의 기사.

今上自卿大夫, 下至賤隸, 好著紫色, 因此紫色之價, 一匹所染, 又直一

왕실의 가례과정에서 조선왕실의 상징인 비단 홍색 보자기에 싸여진 가례물품들은 보자기의 외관만으로도 경의심을 부르는 왕실의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다.

2. 혼례의 사치절제를 위한 계도의 의미

표 3. 영조실록의 보자기 관련 내용

일시	원 문	비고
영조 4년 3월 22일	"금랑(禁郎)이 여주(驪州)에서 죄인을 붙잡아 오는데 호송하는 군졸이 하나도 없고, 죄인 역시 낭두(囊頭)를 하지 않고 밤에는 칼(枷)을 풀어주어 도망하게 했으니..."	낭두(囊頭) : 죄인의 머리에 보자기를 씌움.
영조 14년 2월 12일	"듣건대, 그 가족 상차 속에 황색 보자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칙서가 아니라면 황색 보자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황색보자기 : 외교문서인 칙서를 싸는 외교용 보자기
영조 19년 10월 27일	"만약 명(明)나라에서 내려 준 것이라면 내가 어찌 한낱 내관(內官)을 시켜 받게 하였겠는가? 지금 선처할 방도는 공시를 누런 보자기에 싸서 내시에게 짊어지게 한 다음 칙서에 황제가 내린 물건을 감히 찰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	누런보자기 : 외교문서인 칙서를 싸는 외교용 보자기
영조 28년 2월 11일	예조 당상과 예방 승지(禮房承旨)가 보책궤(寶策櫃)를 받들어 안상(案上)에 내어놓고 보자기를 풀었다.	보책궤(寶策櫃)를 싸는 보자기
영조 28년 2월 28일	"자전(慈殿)의 옥책(玉冊)·옥보(玉寶) 장황(粧纒)과 싸는 보자기는 모두 면주(綿紬)로 하라..."	옥책(玉冊)·옥보(玉寶)를 싸는 보자기의 재질에 대한 언급
영조 28년 11월 17일	"뒤로는 빈전에 홍광직(紅廣織)으로 두른 휘장을 붉은 명주로 대신하고, 보자기와 요 그리고 상건(床巾)은 그 전에 무늬 있는 비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향주(鄉紬)로 대신하고,그전에 향초(鄉紬)를 사용하던 것은 그냥 두라는 뜻으로 책에 기록하여 편집하도록 하라."	태실(太室)의 좌탁(坐榻)에 끼는 상건과 휘장을 무늬가 있는 비단에서 명주와 향주로 대신하도록 함
영조 40년 10월 9일	"선정이 죽은 뒤에 그의 평소 언의(言議)가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긴요한 것만 뽑아 모아 두 책을 만든 다음 《박문순문초(朴文純文抄)》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자기로 싸서 성소와 함께 올립니다."	책보 : 책을 싼 보자기

조선은 건국 이래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의례의 정착에 힘써 왔으며 의례를 행함에도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가지 있는 덕목으로 중시하였다. 조선시대

규범서에 의하면 “의·식 생활에서의 소비는 추위를 가릴 만큼만 입도록 하고 음식은 배를 채울 만큼만 먹으라고 하였으며 의복·음식의 사치를 금하며 먹는 것, 입는 것을 아끼고 검소히 하지 않으면 재물이 어떻게 모이겠는가?”라고 가르치고 있다[11].

또한 조선의 의례문화에 근간이 된 대표적인 가례서인 『가례(家禮)』,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내용 중 혼례 시 바람직한 소비관을 짐작하게 하는 용어로 사치배제(奢侈排除)와 검소(儉素)를 들 수 있는데 즉 혼례를 행함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사치를 금하여 검소하게 행함을 말하는 것이다[12].

조선은 건국 이래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의례의 정착에 힘써 왔으며 의례를 행함에도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가지 있는 덕목으로 중시하였다.

의례 가운데서도 특히 혼례에 있어서는 절제된 소비가 중요한 미덕임을 강조하였으며 사치로 인해 본래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 가르쳤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례 시의 과소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이에 따라 혼례의 사치를 금지하는 다양한 규제가 사회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던 조선 전기부터 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중기까지 마련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국법과 왕명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조선이 건국된 태조에서부터 고종까지 혼례 시 혼례용품에 대한 관련 기록은 총 201건으로 [표 4]와 같다. 그 내용은 과도한 혼수를 금하는 법과 규정을 언급하거나, 규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 54건, 물품별 사치한 혼례용품을 금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용품을 권하는 내용 및 혼수용품 사치로 인한 폐단에 대한 내용 70건, 사대부와 왕실 등의 사회 지도층의 사치한 혼례를 지적하는 내용 77건으로 분류된다.

혼례물품에 관련하여서는 태조 3년(1394) 6월 26일의 기사 내용⁸⁾을 보면 의식 용품 이외에는 신하들은 금을

四, 至於衣裏, 皆用紅染, 丹木紅花之價, 亦爲不賤. 非惟奢侈相尚, 等威無辨, 物價騰(湧) [踴], 亦爲可慮. 지금 위로는 경대부(卿大夫)로 부터 아래로는 천례(賤隸)에 이르기까지 자색(紫色)을 입기를 좋아하니, 이로 인하여 자색(紫色)의 값이 한 필 염색하는 데 값이 또한 한 필이나 듭니다. 옷의 안팎까지 모두 홍색의 염료(染料)를 쓰게 되니, 단목(丹木)과 홍화(紅花)의 값도 또한 험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등차(等次)의 분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物價)가 뛰어나 오르게 되니 또한 염려가 됩니다.

8) 『태조실록』 6권, 1394(태조 3) 6월 26일의 기사.
甲午/都評議使司具禮曹詳定狀啓曰: “進上儀物外, 臣下毋得用金; 兩府外, 毋得服紗羅綾綺, 玉纓子, 環子; 嘉善以下六品以上, 酒器外, 毋得用銀; 七品以下, 酒器亦不許用銀. 品帶及臺省員頂子, 不在此限. 庶人及工商賤隸, 雖有職者, 毋得用銀絹斜皮; 婚姻者亦依職品, 毋得僭用.” 從之.

쓰지 못하고,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옥영자(玉纓子)·옥환자(玉環子)를 쓰지 못하며,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하 6품 이상은 술잔 외에 은을 쓰지 못하고, 7품 이하는 술잔을 은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특히 옷감의 사치에 대한 규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 데,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단인 사피(斜皮), 진채사(眞彩絲), 능금단자(綾錦段子), 사라능단(紗羅綾段), 주취(珠翠) 등을 선호하는 사치를 경계하고 있다.

표 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 시 사치금지에 관한 내용 건수

왕조	내용별 건수			총 건수
	법/규정 관련	혼례물품 관련	왕실/사대부 관련	
태조	-	7	-	7
태종	-	1	-	1
세종	-	5	2	7
성종	10	5	10	25
연산	8	1	8	17
중종	15	25	37	77
명종	10	4	3	17
선조	-	4	-	4
광해	-	1	-	1
인조	3	4	8	15
효종	1	4	2	7
현종	2	1	1	4
숙종	1	3	3	7
영조	1	2	2	5
정조	3	2	-	5
순조	-	1	-	1
고종	-	-	1	1
총계	54	70	77	201

선조 40년(1607) 3월 18일 기록에 따르면 일반인의 혼례에서 사용하는 보자기가 왕실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홍(紅)·자(紫) 두 색깔의 보자기에 금박을 입혀 그림을 그리는 등 국혼(國婚)에 못지않은 비용을 보자기에 사용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⁹⁾

이와 같이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 혼례 시의 사치를

우려하고 국법과 왕명을 통해 혼례 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록 중 옷감에 대한 규제는 [표 5]와 같다.

『영조실록』에도 혼수물품 사치 폐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특히 왕실의 혼사와 상류층의 혼사에 대해 사치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지도층이 모범을 보일 것을 계도하고 있다. 영조 9년(1733) 12월 10일의 기록¹⁰⁾에는 혼인 시 사치하는 자를 적발하여 법으로 다스릴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12월 22일¹¹⁾에는 혼인 시 사치한 풍습으로 인하여 여자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혼기를 놓치는 폐단을 경계하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혼례 시 혼수의 사치와 음식 낭비를 언급하며 영조 40년(1764) 1월 24일¹²⁾의 기록에는 부마의 혼사용품을 감하라고 명하고 있다.

영조 후반기(1740년~1752년)에는 왕실의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영조 25년(1749)에 왕실 주요 기관에서 각종 재정 국고의 낭비가 심한 것을 경계하여 각 궁과 전, 중앙 각사의 재정과 지출 규모를 규정한 『탁지정례』가 편찬되었다. 같은 해 국혼에서 혼례의 풍속이 사치함을 바로잡기 위해 왕실의례에 관한 규정을 정한 『국혼정례』를 발간하여 왕실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낭비를 막고자 하였다. 영조는 혼례가 혼례 자체의 의미보다 사치와 과시로 흐르는 사회적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왕실에서부터의 검소함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여러 차례 제도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1759년에 거행된 본인의 가례에서 혼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천함으로써 술선수범하였다.

9) 『선조실록』 209권, 1607년(선조 40) 3월 18일 기사
 近來奢侈之弊, 日甚一日, 識者之寒心久矣。頃於筵中, 臣已陳其梗概, 自上特令憲府糾正, 而紀綱解弛, 人不畏法。昨日途上, 臣見一婦女, 乘朱屋輜, 男女前導者, 填塞街巷。至於紅、紫兩色之袱, 畫以泥金, 僭擬國婚, 正是前日臣之所達: ‘有識之人亦然, 殊不可曉。’者也。

10) 『영조실록』 36권, 1733년(영조 9) 12월 10일의 기사.
 我國閭閻, 嫁娶納幣之規, 多濫無節。多者動費累百金, 少亦不下百金。貧不能辦此, 則離年過四五十, 莫能娶妻, 以至廢絕倫常之境, 誠爲慨然。謹按《五禮儀》, 幣用紬或布, 三品以下至庶人, 玄纁各一, 先王定制, 可謂至矣, 而廢闕不行, 其在遵法正俗之道, 宜嚴檢飭。請閭里間婚幣, 必以玄纁, 永爲定式。過此者, 法司摘發家長, 治以制書有違之律, 俾革侈濫之習。

11) 『영조 실록』 36권, 1733년(영조 9)12월 22일의 기사.
 吁! 爲人父母, 有子有孫, 男婚女嫁, 禮之大者, 情之當然, 而或年過而未嫁, 至老而未婚, 其弊之由, 卽奢侈之所致也。

12) 『영조실록』 103권, 1764년(영조 40) 1월 24일의 기사.
 命減駙馬婚具。時國用日耗, 而官婚將壘疊, 上欲祛其侈濫, 凡樽燭香花刻鏤髹鍍之制, 或鑄或減, 而食品亦只五器而止。

표 5.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사치에 관한 기록 중 옷감 관련 내용

일시	원 문	옷감
태조 3년 6월 26일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옥영자(玉纓子)·옥환자(玉環子)를 쓰지 못함 서민이나 공업자·상업자들과 하인들은 비록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며 사피(斜皮)는 쓰지 못함	명주사피(斜皮)
태조 2년 4월 1일	능라 단자(綾羅段子)는 진상(進上)하는 의복과 어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단(禁斷)하도록 상소	능라단자(綾羅段子)
태조 7년 9월 12일	연향(宴享)과 재회(齋會)에는 금은(金銀)·주옥(珠玉)·진채사(眞彩絲)·화단자(花段子) 등 물건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함	진채사(眞彩絲)
세종 5년 1월 9일	불과 요는 능금 단자(綾錦段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신부(新婦)의 복식(服飾)도 사라능단(紗羅綾段)을 금지 집의 재산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명주[주(紬)]·모사면포(蘇布)를 사용	능금 단자(綾錦段子) 사라능단(紗羅綾段) 명주 모사면포(蘇布)
세종 17년 1월 25일	사대부집 혼인에 능금(綾錦)·채백(綵帛)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숙신 응주(淑愼翁主)의 하가(下嫁)에 채백을 쓰지 말고 면주(綿紬)를 사용할 것	능금(綾錦) 채백(綵帛) 면주(綿紬)
세종 30년 5월 11일	속이 사치한 것을 숭상하여 혼인에 다루어 능라(綾羅)를 써서, 이 때문에 혼인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히 금할 것	능라(綾羅)
성종 4년 7월 30일	능단(綾段)과 주취(珠翠)등 국산품이 아닌 것을 혼수에 사용하는 것을 금함	능단(綾段) 주취(珠翠)
성종 12년 6월 21일	국가에서 엄하게 금하는 법을 대전(大典)에 갖추어 실었는 데도 혼인시 우리나라 것이 아닌 사라능단(紗羅綾段)을 쓰고 함룡(函籠)을 많이 장만하여 말에 가득 실어 보내는 일이 다반사니 중벌으로 처벌할 것	사라능단(紗羅綾段)
연산 8년 1월 28일	성종(成宗)과 주상(主上)의 가례(嘉禮)에 모두 명주 이불[주금(紬衾)]을 사용하여 검소하였으나 이번 공주의 혼례가 사치한 것으로 아랫사람이 본받을 수 있음	명주이불

표 5.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사치에 관한 기록 중 옷감 관련 내용(계속)

일시	원 문	옷감
명종 2년 12월 3일	근래에 사치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천일(賤孽)들과 시예(市隸)들까지도 모두 비단과 주옥(珠玉)으로 물치장을 하고 있으며, 사대부 집에서는 혼인할 때 역시 극도로 사치를 부려 비단과 주옥이 아니면 하지 않음	비단
명종 8년 8월 29일	혼인하는 집에서는 사치를 다해 납채(納采)에 현훈(玄纁)을 쓰는 것이 법인데도 부귀한 집에서는 모두 사라능단(紗羅綾段)을 쓰며, 그 수효가 줄잡아 10필(匹)이나 되는 폐단이 심하므로 단속을 강화함	사라능단(紗羅綾段)
명종 8년 10월 18일	납채에 현훈(玄纁)을 쓰되 2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동뢰연(同牢宴)과 제사상의 유밀과는 7품(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탕수(湯水)도 5 미(味)를 넘지 못하게 함	현훈(玄纁)

선조 36년 1월 6일	사대부들 사이에 거친 벼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가 드물고, 혼인할 때에는 무늬가 화려한 비단옷으로 꾸미기까지 함	베 비단
선조 40년 2월 19일	사치풍조 한 가지가 날로 더욱 심해져서 당상관이 평상시에 으레 비단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는 혼인할 때에도 외람되게 국혼(國婚)처럼 하고 있음	비단
선조 40년 3월 18일	사치스런 폐단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어 홍(紅)·자(紫) 등 색깔의 보자기에 금박을 입혀 그림을 그리는 등 참람하게 국혼(國婚)을 흉내내고 있음	홍(紅)·자(紫) 금박보자기
효종 3년 11월 13일	도성(都城) 안은 위로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천인까지 모두가 지극히 사치하여, 벽에 바르는 것은 외국이 능화지(菱花紙)가 아니면 쓰지 않고, 입는 옷은 능단(綾段)·금수(錦繡)가 아니면 쓰지 않음	능단(綾段) 금수(錦繡)
효종 9년 10월 11일	반드시 비단과 주옥(珠玉)을 쓰며, 상사에는 오로지 남이 보기 좋게 꾸미는 것으로 일삼고 있으니 혼인과 상사에 대해 제도를 정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비단
현종 개수 1년 5월 9일	국전을 살펴보건대 당하관 이하는 혼인할 때 사라(紗羅)·능단(綾段)·계담(鬮縵)을 쓴 경우에는 모두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도(世道)가 날로 비하되어 인심이 날로 사치에 빠지고 있는데,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절실하게 금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사라(紗羅) 능단(綾段) 계담(鬮縵)

역대 실록마다 혼례 시 사치를 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영조는 보자기에 대한 사치금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영조실록』 28년(1752) 2월 28일과 11월 17일의 기록에 왕실에서 사용되는 보자기의 재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¹³⁾ 이러한 배경에는 그 당시 보자기를 만드는 옷감이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비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6]은 『국혼정례(國婚定例)』에 규정된 육례에 사용하는 보자기와 영조·정순왕후 가례에서 육례에 사용한 보자기의 재질과 수량을 비교·정리한 표이다.

각 육례절차에서 『국혼정례(國婚定例)』에서 규정한 보자기와 영조·정순왕후 가례에서 사용된 보자기의 수량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옥책 및 금보 등의 주요 상징물을 싸는 보자기와 이를 보관

13) 『영조실록』 75권, 1752년(영조 28) 2월 28일의 기사.

“慈殿玉冊, 玉寶粧縵及裘袱, 俱以綿紬爲之。 儀仗、輦輿, 一依昨春例修補。 慈殿、中宮殿上冊資受質處所, 一依庚申例舉行, 軒架鼓吹勿設。 方物、物膳並勿舉行, 只封箋文, 一以體我慈聖謙挹之德, 一以伸予強從之意。”

『영조실록』 78권, 1752년(영조 28) 11월 17일의 기사.

“太室坐榻所排, 昔則用綾, 今則用紬。 殯魂殿、殯魂宮用綾緞, 於心若何? 此後殯殿紅廣織帳, 代以紅紬, 袱與褥、床巾, 前或以綾緞者, 皆代以鄉紬, 前用鄉縵者, 仍前之意, 載之編輯。”

하기 위한 보통, 보록, 주통, 주록 등을 싸는 보자의 재질은 대홍운문대단(大紅雲紋大緞)에서 대홍광적(大紅廣)으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홍운문대단은 구름무늬가 있는 두꺼운 비단으로써 중국산 비단이며, 대홍광적(大紅廣)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늬가 없는 홍색의 넓은 견직물로서 『국혼정례(國婚定例)』의 제정 10년 후에 거행된 본인의 가례에서 몹소 모범을 보여 사회전반에 만연된 사치와 낭비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국혼정례(國婚定例)』와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사용된 육례용 보자기 비교

혼례 절차	포장 물품	물 목	
		보자기	
		국혼정례	가례도감 의궤
납채	흑칠중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산기러기 1마리	홍주 2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납징	흑칠중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왜주홍칠속 백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고기	당주홍칠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책비	왜주홍칠괘 1부	안싸개용 대홍운문대단 1폭반 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안싸개용 대홍광적 1폭반 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홀보자기 1건
	왜주홍칠명 복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옥책	대홍운문대단 헛보자기를 철수에 따라 준비 안싸개용 대홍방사주에 금줄을 올린 겹보자기 2건	대홍광적 1척9촌 막이용 헛보자기 5건 안싸개용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 자물쇠(鎖金) 겹보자기 2건

표 6. 『국혼정례(國婚定例)』와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사용된 육례용 보자기 비교(계속)

혼례 절차	포장 물품	물 목	
		보자기	
		국혼정례	가례도감의궤
책비	화금왜주홍 칠내함 1부	안싸개용 홍주 3폭반 홀보자기 1건 겉싸개용 자초 3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외괘	홍주 5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금보	대홍운문대단 헛보자기 1건	대홍광적 헛보자기 1건
	보통 1좌	대홍운문대단 헛보자기 1건	대홍광적 헛보자기 1건
	보록 1좌	대홍운문대단 헛보자기 1건	대홍광적 헛보자기 1건
	주통 1좌	대홍운문대단 헛보자기 1건	대홍광적 헛보자기 1건
	주록 1좌	대홍운문대단 헛보자기 1건	대홍광적 헛보자기 1건
친영	산기러기 1마리	홍주 2폭 홀보자기 1건	동일함
동리	초를 담은 당주홍칠함 3개 (화롱촉, 홍사촉 등)	홍주 5폭 홀보자기 6건	동일함 (안싸개겉싸개용 각 3건)

육례 외에 사용된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 자기는 무늬가 없는 국내에서 생산된 명주나 무명의 종류인 홍초(紅紬), 홍주(紅紬), 대홍광적(大紅廣), 자적초(紫的紬), 자적주(紫的紬), 자적토주(紫的吐紬), 홍세 목(紅細木) 등이 사용되었다. 이는 왕실 혼사에서의 사치함이 백성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영조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본인의 가례를 통해 왕실에서부터 검소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백성의 혼례문화가 사치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는 영조의 애민정신의 표현이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유교적 의례문화가 정착되고 왕실의례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된 18세기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에 함의된 생활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상기 연구과정을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보자기

의 종류는 홀보자기[단보(單褙)], 겹보자기[겹보(袂褙)], 상건(床巾), 부건(覆巾) 및 싸개용 핫보자기[유보(襦褙)], 옥책(玉冊)사이에 끼우거나 옥책(玉冊)사이를 막는 막이용 핫보자기[격유보(隔襦褙)] 및 옥책(玉冊)을 싸는 갑(匣) 등이 있었다. 이들 보자기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 시에 필요한 용품을 싸서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예물의 보호를 위해 솜을 넣어 제작 후 예물 사이에 끼워 넣거나 예물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상건 및 부건은 의례에 사용된 상을 덮거나 두르는 용도였다. 물건이나 문서는 두 겹의 천으로 제작한 겹보자기로 한번 싸서 함에 넣은 후 한 겹의 홀보자기로 그 함을 다시 싸는 것이 일반적인 예법이었다. 핫보자기는 내용물을 보호하도록 솜을 안에 넣어 만든 보자기로 책비 시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싸는 용도로 제작되었다.

둘째, 영조는 혼례 시 사치를 경계하여 본인의 가례에도 보자기 재질에 대하여 사치를 금한 기록이 있었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대부분 홍주(紅紬), 홍초(紅綃), 대홍광적(大紅廣的) 등의 무늬가 없는 옷감으로 제작되었다. 가례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국혼정례』에서 규정한 소요량과 일치하였다. 옥책 및 금보 등의 주요 상징물을 싸는 보자기와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보통, 보록, 주통, 주록 등을 싸는 보자기의 재질은 『정례』의 규정에서 대홍운문대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례도감의궤』의 기록에는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대홍광적으로 변경되어 본인의 가례를 통한 왕실에서의 검소와 절약 정신을 강조하였다.

셋째, 18세기는 유교적 의례문화가 확립되고 실행되던 시기였으며 조선왕실에서의 의례는 유교적 이념을 따르고 바르게 실천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실행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왕의 가례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유교적 예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가례의 절차마다 중요 물품과 상징물을 싸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자체가 의례도구로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왕실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국가 간의 외교 의전용품 혹은 왕실의 위

업과 권위를 나타내는 의례용품의 의미를 지녔다. 이와 같은 보자기의 상징적 의미를 간파했던 영조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례용 보자기를 통해서도 국가적으로 당시 혼례과정에서 만연해 있던 사치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담아냈다.

넷째,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우리의 전통 의례용품인 동시에 전통의례에 깃들여져 있는 정성과 예를 표현한 문화자산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수준으로 제작되고 사용된 왕의 가례용 보자기는 왕실의 혼례용품임과 동시에 사치배제를 위한 계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물품으로 혼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이다.

보자기는 물품을 덮고, 싸고, 나르는 일상의 생활용품이며, 각종 의례에 활용되어온 의례용품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왕실의 기물 중에는 사소한 물품일 수 있으나, 제작 품의에서부터 사용용도까지 왕실의 기록물에 남아있어 제작과정과 용도 등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의례문화와 사회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왕실의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의례의 초기 단계에 용도, 수량, 형태에 대한 계획을 거쳐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중요한 의례용품이었다. 현대 혼례에서도 전통혼례의 요소가 지속되고 있고, 차후에도 전통혼례의 절차 중 함보내기, 폐백 및 예단 등은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활용되는 의례용 보자기는 생활문화의 계승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의례용 보자기를 통해 내용물의 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고, 예절과 정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전통 혼례문화를 현대 생활문화로 창조해 나아가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참 고 문 헌

- [1] 신병주, 박례경, 송지원, 이은주, *왕실의 혼례식 풍경*, 서울:돌베개, p.114, 2013.
- [2] 한형주, “15세기 祀典體制的 성립과 그 추이- 『國朝五禮儀』 편찬과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Vol.89, pp.127-161, 2004,
- [3]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국조오례의』 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Vol.43, pp.45-82, 2010.
- [4] 이범직,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Vol.71, pp.31-61, 1990.
- [5] 강제훈,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Vol.107, pp.169-228, 2012.
- [6] 국립고궁박물관 편저,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국립고궁박물관, p.77, 2017.
- [7] 박소동 역,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민족문화추진회, p.2, 1997.
- [8] 이종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현암사, p.91, 2009.
- [9] 김수경, “조선 궁보의 기능과 가치,” *미술사학회지*, Vol.12, pp.5-23, 1998.
- [10] 강서영,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고궁문화*, Vol.5, p.77, 2012.
- [11] 이길표, 주영애,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p.172, 1999.
- [12] 최배영, *家禮書를 통해 본 「婚禮」 觀 研究 : 「嘉禮」. 「家禮輯賢」. 「四禮便賢」*,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9, 1998.

저 자 소 개

김 효 주(Hyo-Joo Kim)

정회원



- 1985년 6월 : U. C. L. A 심리학 과(문학사)
- 2013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문 화산업학과(문학석사)
- 2018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생 활문화소비자학과(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외래 교수

<관심분야> : 생활문화, 규방공예, 차문화

주 영 애(Young-Ae Ju)

정회원



- 1985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 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8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 정관리학과(가정학석사)
- 1992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 정학(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 화산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생활문화, 예절교육, CS